

	<h2>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6-3-20
			제정일자	2017.05.01
	개정일자	2018.02.19		
	개정번호	Ver.1	총페이지	4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사업단은 동양미래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(이하 “본 사업단”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사업단은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대학 인근지역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 대학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개정 2018.02.19.>

1. 맞춤형 창업시스템을 통한 지역 활성화
2. 대학-주민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
3. 디자인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

제3조(소재) 본 사업단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.<개정 2018.02.19.>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구성) 본 사업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, 본 대학 산학협력단장의 지휘를 받는다.

1. 사업단장
2. 사업수행위원
3. 직원 및 연구원

제5조(단장)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행정지원 인력을 지휘한다.

② 사업단장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본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.

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8.02.19.>

제6조(사업수행위원) 본 사업단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사업수행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수행위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8.02.19.>

제7조(직원 및 연구원) 본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.

제 3 장 사업 수행 절차

제8조 (사업주관부서) 맞춤형 창업시스템을 통한 지역 활성화, 대학-주민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, 디자인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은 본 사업단이 그 업무를 주관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9조 (사업수행단계) 사업은 매 년도마다 사업정책수립, 사전조사 및 분석, 계획수립, 시행, 효과성평가,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의 7단계를 거쳐 시행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0조 (사업정책수립) 사업주관부서는 매 년도 사업개시 전에 사업별로 사업의 목적, 추진체계, 수행단계, 세부업무 영역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된 사업정책을 수립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1조 (사전조사 및 분석) 사업주관부서는 각 사업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2조 (계획수립) 사업주관부서는 사전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구체화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. 시행계획은 목적, 절차, 방법 및 예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3조 (시행) 사업주관부서는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4조(효과성평가) 당해 년도의 사업이 종료되면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5조(환류) 사업주관부서는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본 사업단의 차년도 사업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시행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 4 장 운영 위원 회

제16조(위원회)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7조(구성과 임기) ① 본 위원회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캠퍼스타운사업단장, 산학협력단장, 기획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18.02.19.>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는다.

제18조(임무)

1.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단 규칙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9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.

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.

제20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제10조 3호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

제 6 장 재정 및 회계

제21조(세입) 본 사업단의 세입은 서울특별시 주관 캠퍼스타운사업에 관련된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제22조(세출) 본 사업단의 세출은 사업단 운영에 관련된 경상비,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에 의거한 지출 등 본 사업단의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

제23조(예·결산) 사업단장은 운영계획(안)과 예산(안)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(내역)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4조(회계) ① 본 사업단의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 내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사업단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.

② 본 사업단의 사업비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고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.

③ 사업단장, 직원 및 기타 본 사업에 관련하여 활동하는 연구원들의 각종 수당, 임금, 출장비 등은 제②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회의나 기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

칙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